

제 1634 호
1992. 2. 17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이 해 원
 편집인 : 공 보 관 이 상 진
 전 화 : 731-8111~3
 인 쇄 : 한국컴퓨터산업(인쇄)주식회사
 전 화 : 273-8111~3

시 보

차 례

● 규 칙

제 2451 호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규칙	2
제 2452 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6
제 2453 호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8

(이면 계속)

상																			
관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노는기쁨 순간이고 일한보람 오래간다”

규 칙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직제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2. 2. 17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㉞

●서울특별시규칙제2451호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직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하부기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①본부장 밑에 청소국과 시설관리국을 두며, 청소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시설관리국장은 지방시설기감, 지방공업기감, 지방시설부기감 또는 지방공업부기감으로 보한다. ②청소국장은 총무, 기획홍보, 파장, 경리, 쓰레기 및 폐기물수거작업, 장비관리 및 위생처리 업무를, 시설관리국장은 청소관련시설의 관리계획, 시설의 계획 및 건설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청소국) ①청소국에 총무부 및 사업부를 두며, 각 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부에 총무과, 기획홍보과, 파장과 및 경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사업부에 작업1과, 작업2과, 장비관리과 및 위생처리과를 두며, 작업1과장 및 작업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장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계기과로, 위생처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항공기과로 보한다.

제4조(시설관리국) ①시설관리국에 시설계획부, 시설1부 및 시설2부를 두며, 시설계획부장은 지방시설기정으로, 시설1부장

및 시설2부장은 지방시설기정 또는 지방공업기정으로 보한다.

②시설계획부에 시설관리과, 계획1과 및 계획2과를 두며, 시설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계획1과장은 지방토목기과로, 계획2과장은 지방토목기과, 지방항공기과 또는 지방환경기과로 보한다.

③시설1부에 설계총괄과, 설계1과, 설계2과 및 설계3과를 두며, 설계총괄과장은 지방토목기과로, 설계1과장은 지방건축기과로, 설계2과장은 지방기계기과 또는 지방전기기과로, 설계3과장은 지방환경기과 또는 지방항공기과로 보한다.

④시설2부에 시설총괄과, 시설1과 및 시설2과를 두며, 시설총괄과장은 지방토목기과로, 시설1과장은 지방기계기과 또는 지방전기기과로, 시설2과장은 지방항공기과 또는 지방환경기과로 보한다.

제5조(난지도쓰레기 종합처리사업소) ①난지도쓰레기 종합처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관리과와 시설과를 두며,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토목기과 또는 지방항공기과로 보한다.

②관리과에 서무계, 작업관리계 및 장비계를 두며, 서무계장 및 작업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장비계장은 지방기계기사로 보한다.

③시설과에 시설계 및 공장관리계를 두며, 시설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 공장관리계장은 지방전기기사 또는 지방기계기사로 보한다.

④사업소에서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쓰레기의 종합처리 및 안정화사업 추진

- 2. 쓰레기의 위생처리방법의 연구발전
- 3. 쓰레기의 위생처리로 생성되는 부산물의 처리와 이용방법에 관한 연구

제6조(위생처리장) 위생처리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p>1. 본노의 종합처리 및 기타 이와 관계되는 사항</p> <p>2. 본노의 위생적 처리로 생성되는 부산물의 처리와 이용방법의 연구</p> <p>3. 본노의 위생처리방법의 연구발전</p> <p>제7조(사무분장) ①본부의 과별 분장차무는 별표 1과 같다.</p> <p>②난지도쓰레기 종합처리사업소의 파·계</p>	<p>별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직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p>
---	--

<별표 1>

청소사업본부 사무분장표

부 명	과 명	분 장 사 무
총 무 부	총 무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서 및 관인관수, 청사관리 2. 행사, 회의, 보안, 당직 및 청중 단속 3. 법규, 송무, 고시, 공고심사와 조직·정원 관리 4. 업무용 자동차 관리 5. 인사제도 연구 및 개선 6. 공무원의 승진, 임용 및 전보 7. 공무원의 보수, 연금, 의료보현, 기타 직인 후생복지 8. 공무원의 복무, 상훈, 징계, 소청 및 교육훈련 9. 자체감사 및 구·동 청소행정 감사 10. 진정 및 비위사항 조사, 처리 11. 노·사단체 교섭 및 협의 12.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13. 환경미화원 임금 및 처우개선 14.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관리 15.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16. 기타 다른 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획홍보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업무와 종합조정 2. 기본운영계획 단기·중기·장기계획 수립조정, 심사분석 3. 중·장기 재정계획 및 재정 운영계획 수립 4. 예산편성, 배정 및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5. 투자사업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총괄 6. 경영개선방안 강구 및 조정 7. 홍보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8.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사항 총괄 9. 광고, 고시 및 모니터 운영 10. 각종 홍보간행물 발간, 배포 및 도서관리 11. 홍보자료 조사·수집 및 분석 12. 국회, 지방의회, 정당, 정책회의 업무

부 명	과 명	분 장 사 무
총 부 부	기획홍보과	13. 대통령, 국무총리, 시장 및 본부장 지시사항 총괄, 분석, 평가 14. 자료종합 수집 및 유지관리
	과 정 과	1. 세입기본계획 수립·조정·통제 및 분석 2. 세입관계 제도개선 및 요율조정에 관한 사항 3. 세입현재, 조정 총괄 및 평가 4. 구·동사무소의 수수료 부과정수와 감면에 대한 지도감독 5. 세입의 체납정수에 관한 계획 및 지도감독 6. 세입의 과징대상, 자원관리 총괄 7. 세입의 탈루, 신규자원 조사·발굴 및 지도감독 8. 통합공과금에 관한 제반 업무
	경 리 과	1. 예산의 지출 및 결산 2. 공사도급, 용역, 물품구매, 제조, 운반 및 임차 계약 3. 자금수급 계획 및 배정 4.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판 5. 재무제표 작성 및 원천징수 정리 6. 금고에 관한 사항 7. 물품의 수급계획 및 출납 8. 물품 및 재산관리 총괄 9. 자재보관 관리 10. 철거자재의 재활용
사 업 부	작 업 1 과	1. 일반폐기물 분리수거작업 관리 총괄 및 구·동 지도감독 2. 환경미화원 인사, 복무 및 안전관리 총괄 3. 적환장 및 중간집하장 운영·관리 4. 대행업체 지도감독 5.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작 업 2 과	1.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처리 총괄 및 구·동 지도감독 2. 일반폐기물 감량화에 관한 사항
	장 비 관 리 과	1. 청소장비 경수 유지관리 총괄 및 구·동 지도감독 2. 수송대책 수립 및 추진 3. 청소장비의 개선 및 개발보급 4. 차량정비 기본계획 수립추진 5. 청소장비 기술·정보 수집 및 개발보급
	위 생 처 리 과	1. 분뇨 및 오물(정화조)처리 종합계획 및 구·동 지도감독 2. 분뇨 및 오니(정화조) 수집·운반 작업관리 및 지도감독 3. 정화조 설계 시공업등록, 정화조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4.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장 이용지도에 관한 사항 5. 공중변소 관리 및 변소개발에 관한 사항

부 명	과 명	분 장 사 부
시설 계획부	시설관리과	1. 청소시설 운영관리계획 2. 청소시설 부지매입, 재산관리 3. 청소시설 부자제원관리 4.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업소 행정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계획 1 과	1. 청소시설 종합계획 수립 2. 쓰레기 중간 처리시설 계획 총괄 3. 청소시설 민자유치 계획 4. 청소시설 위탁업무 총괄 5. 쓰레기 중간처리시설 기술개발 및 연구
	계획 2 과	1. 쓰레기 최종처리시설계획 총괄(수도권매립지 건설계획, 난지도매립지 안정화 계획) 2. 수송도로 건설에 관한 사항 3. 난지도매립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시설 계획 5. 쓰레기 최종처리 및 분뇨처리시설 기술개발 및 연구 6. 사업소 기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시설 1 부	공통 사항 (설계사항)	1. 청소시설 공사의 기본계획(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포함) 기본설계 실시계획 2. 청소시설 위탁업무 중 기본계획(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포함), 기본설계, 전시설계 지도감독 3. 청소시설 준공 후 운전계획 수립
	설계총괄과	1. 청소시설 설계업무 총괄 및 도면·시설 설계 2. 교통처리계획 3.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설계 1 과	• 건축시설 설계
	설계 2 과	• 설비시설 설계, 전기시설 설계
	설계 3 과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계
시설 2 부	공통 사항 (시설사항)	1. 청소시설 공사시행 2. 공경계획 및 진도관리업무 3. 청소시설 건설기록 및 자료관리 4. 소관공사의 물동계획 및 자재수급 관리
	시설총괄과	1. 청소시설 건설업무 총괄 및 도면·건축시설 건설 2. 교통처리 시설 건설 3.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시설 1 과	• 설비시설 건설, 전기시설 건설
	시설 2 과	• 환경오염방지시설 건설

〈별표 2〉		난지도쓰레기 종합처리사업소 사무분장표	
과 명	계 명	분 장 사 무	
관 리 과	서 무 계	1. 문서, 보안, 관인관수 및 청사관리 2. 인사, 복무, 급여 및 후생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4. 기타 소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작업관리계	1. 쓰레기 반입접수 2. 처분장 악취 및 방역 3. 처분장 진입차량 통제 및 안전관리 4. 불법행위 단속 5. 일반 산업폐기물(오니 포함) 업무처리 6. 청원경찰 관리 7. 방역장비 유지관리	
	장 비 계	1. 장비 유지 관리 2. 중장비 유류 업무 3. 세운·세차 시설 유지 관리 4. 중기 조종원 및 정비원 관리	
시 설 과	시 설 계	1. 처분장 매립계획 및 안정화 사업 추진 2. 시설공사 및 시설물 유지 관리 3. 임시사토장 및 시유지 관리	
	공장관리계	1. 공장 및 공장 부속장비 관리 2. 공장시설과 관련된 일체의 작업 관리 3. 사업소 내 모든 전기시설 유지 관리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1992. 2. 17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화공적 1" 및 "토목·화공 또는 기계적 1"을 각각 삭제한다. 6급정원 "453"을 "446"으로 하고 정원내용 중 행정직 "308"을 "304"로, 기계직 "13" 을 "12"로, 토목직 "42"를 "41"로 하며 "환경직 1"을 삭제한다. 7급정원 "556"을 "544"로 하고 정원내용 중 행정직 "396"을 "389"로 하고, 기계직 "15"를 "14"로, 전기직 "14"를 "13"으로, 화공직 "7"을 "5"로, 토목직 "51"을 "50" 으로 한다. 기능직정원 "480"을 "478"로 하고 정원내 용 중 10등급 "457"을 "455"로 하며 사 무보조원 "128"을 "126"(타자 "90"을 "88"로)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규칙제2452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공무원 정원) 제1항의 별표 1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총제정원 '1,894" 를 "1,867"로 하고 정원내용 중 5급정원 "245"를 "239"로 하며, 정원내용 중 행정 직 "167"을 "163"으로 하고, "토목 또는			

종조 제2항의 "별표 2-7" 및 "2-8"을 각각 삭제하며, 별표 "2-9" 내지 별표 "2-21" 을 별표 "2-7" 내지 "2-19"로 하고, 별표 "2-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별표 "2-22" 내지 "2-36"을 별표 "2-21" 내지 "2-35"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 지방공무원 정원표

가. 사업본부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1 급	1	관리관 1
2~3급	2	행정직 1, 시설 또는 공업직 1
4 급	5	행정직 2, 시설직 1, 시설 또는 공업직 2
5 급	18	행정직 7, 행정 또는 기계직 1, 토목직 3, 건축직 1, 화공 또는 환경직 2, 기계 또는 전기직 2, 토목·화공 또는 환경직 1, 행정 또는 화공직 1
6 급	36	행정직 16, 토목직 5, 기계직 4, 건축직 3, 화공직 4, 전기직 2, 환경직 2
7 급	54	행정직 29, 기계직 6, 토목직 5, 전기직 3, 건축직 3, 화공직 4, 환경직 4
8 급	25	행정직 13, 기계직 3, 토목직 2, 건축직 1, 전기직 2, 화공직 2, 환경직 2
기능직	18	10등급 18 : 운전원 5, 사무보조원 7(타자 7), 조무원 6(조무 5, 집배 1)
합 계	159	

나. 남지도쓰레기 종합처리사업소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4 급	1	행정직 1
5 급	2	행정직 1, 토목 또는 화공직 1
6 급	5	행정직 2, 기계직 1, 토목직 1, 전기 또는 기계 1
7 급	5	행정직 3, 기계직 1, 토목직 1
8 급	10	행정직 4, 기계직 3, 보건직 1, 환경직 1, 토목직 1
9 급	13	행정직 4, 기계직 2, 전기직 2, 화공직 1, 환경직 1, 토목직 3
기능직	67	6등급 2 : 기계장 2 7등급 14 : 기계장 12, 전기장 2 8등급 10 : 기계원 10 9등급 7 : 기계원 7 10등급 34 : 토목원 3, 전기원 3, 기계원 4, 운전원 10, 위생원 5 (위생 2, 사역 3), 사무보조원 1(타자 1), 조무원 4 (조무 3, 집배 1), 방호원 4
합 계	103	

다. 위생처리장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5 급	1	기계 또는 화공직 1
7 급	2	행정직 1, 기계 또는 전기직 1
8 급	3	행정직 1, 화공직 1, 기계 또는 전기직 1
9 급	3	행정직 1, 기계 또는 전기직 2
기능직	26	6등급 8 : 기계장 또는 전기장 8 3등급 4 : 기계원 또는 전기원 4 10등급 14 : 전기원 1, 기계원 7, 운전원 2, 사무보조원 1(타자 1), 방호원 2, 위생원 1(사역 1)
합 계	35	

<p>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을 이 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2. 2. 17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p> <p>●서울특별시규칙제2453호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의 제명과 동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시민과”를 “시민1과”로 한다.</p> <p>제19조의 다음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p> <p>제19조의2(시민2과) ① 시민2과에 불편개선 계·민원처리1계 및 민원처리2계를 두며, 불편개선계장 및 민원처리1계장은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민원처리2계장은 지방행 정사무관, 지방토목기과 또는 지방건축기 과로 보한다.</p> <p>② 시민2과의 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 와 같다.</p> <p>1. 불편개선계 가. 시민생활 민원의 해소를 위한 종합 계획수립 및 조정 나. 시민여론 수렴 및 분석 다. 민원업무의 제도개선 및 시정건의 라. 시민불편사항 조사·개선 마. 시정통신운영 및 전문사항 처리</p>	<p>바. 파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p> <p>2. 민원처리1계 보건위생·노동·사회·세무·회계·교통·산 업경제·주민등록·호적·병사에 대한 가. 민원상담 및 처리 나. 민원의 사실조사 및 위법부당사항 시정 다. 시민과 대화 및 공청회 운영</p> <p>3. 민원처리2계 토목·도시계획·건축·주택·재개발·상하수 도·가스·환경·공해·소방에 대한 가. 민원상담 및 처리 나. 민원의 사실조사 및 위법부당사항 시정 다. 전파민원 신고센터 운영</p> <p>제20조 다음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20조의2(생활체육과) ① 생활체육과에 진 흥계·개발계·관리계 및 시설계를 두며, 진흥계장 및 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으로, 개발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 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시설계장 은 지방임업기과 또는 지방건축기과로 보 한다.</p> <p>② 생활체육과의 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진흥계</p>
--	---

<p>가. 여가생활 및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 계획수립 및 시행</p> <p>나. 체육정보 조사연구 및 통계관리</p> <p>다. 서울시 체육회 운영 및 경기단체 지도</p> <p>라.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p> <p>2. 개발계</p> <p>가. 여가생활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지도</p> <p>나. 여가생활 동호인 조직 및 지도자 육성관리</p> <p>다. 직장운동부 육성지도 및 체육행사 주관</p> <p>라. 스포츠교실·사회체육센터 운영지도</p> <p>3. 관리계</p> <p>가. 체육시설 등록·신고에 관한 사항</p> <p>나.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p> <p>다. 체육시설업 관리 및 지도감독</p> <p>라. 체육시설업자협의회 지도감독</p> <p>4. 시설계</p> <p>가. 여가생활 관련시설(공원과 및 녹지와 관장시설 제외)의 개발계획 수립 및 지도</p> <p>나. 체육관련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p> <p>다. 레크리에이션·레저관련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p> <p>라. 시립체육시설 관리지도 감독</p> <p>다.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p> <p>제25조 내지 제29조를 삭제한다.</p> <p>제38조 다음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38조의2(소비자보호과) ①소비자보호과에 물가1계·물가2계·공정거래계 및 소비자보호계를 두며,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p> <p>②소비자보호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물가1계</p> <p>가. 물가종합대책수립 및 조정총괄</p> <p>나. 농수산물과 식품품 등의 가격조사·물가대책수립·물가동향의 종합분석 및 조정</p> <p>다. 물가대책위원회 운영</p> <p>라.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p>	<p>하는 사항</p> <p>2. 물가2계</p> <p>가. 서비스업과 공산품 등의 가격조사 및 물가대책수립</p> <p>나. 물가동향의 종합분석 및 조정</p> <p>3. 공정거래계</p> <p>가.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상도의 양양대책 수립과 조정</p> <p>나. 가격표시제 확립 및 상품권의 규제</p> <p>다. 특정거래품에 관한 사항</p> <p>라. 기타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p> <p>4. 소비자보호계</p> <p>가. 소비자보호대책 수립 및 조정</p> <p>나. 소비자 고발사항 처리 및 프로그램 운영</p> <p>다. 소비자보호단체 지도육성</p> <p>제59조제2항제2호 중 “바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바. 레크리에이션 및 시설관리관리에 관한 업무의 조정과 청소사업본부 지도·감독</p> <p>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